#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0239 발의연월일: 2025. 4. 30.

발 의 자:성일종·김태호·인요한

고동진 • 박덕흠 • 최보윤

김상욱 · 서지영 · 송석준

윤상현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안정적인 출산, 유산·사산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신체적 후유증 회복 등을 위하여 지원한 것이나 이러한 기간에는 그 배우자에게도 휴가를 주고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산모의 곁에서 가사일을 돕는 등 협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특히 다자녀를 출산, 유산·사산한 경우에 배우자의 도움은 더욱 절실하므로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원 대상에 「근로기준법」의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연장되는 배우자 출산휴가 및 다자녀 출산·유산·사산에 따른 휴가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여 가정에서 남성 근로자도 육아의 문제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제1호 등).

# 참고사항

이 법률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40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76조의2제1항 중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을 "출산전후휴가기간, 유산·사산휴가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기간"으로,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77조제1항 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후단 중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를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 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 한 법률 기 제18조에 따라 피보 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 산 · 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산휴가-----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8조 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 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 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 2. -----출산전후 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 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 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 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 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 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 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 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 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 (30일을 한도로 하되, 미숙아

<u>.</u>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1
<u>출산전후휴가,</u> 유산·사산
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del></del>

를 출산한 경우에는 40일을 한도로 하고, 한 번에 둘 이 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 한다.

2. · 3. (생략)

②·③ (생 략)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 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 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 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 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 간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 우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 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 산 · 사산휴가 종료일까지의 기 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 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게 지급한다.

2.·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
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호시고중하
출산전후휴가
기간, 유산·사산휴가기간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기간
<u>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u>
<u>휴가 또는 배우자 유산·사산</u>
<u>휴가</u>

#### ② (생략)

제77조(준용) 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 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난임치료휴가"로 본다.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 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반환명령, 사실 확인, 지급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

<u>.</u>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①
<u>출산</u>
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
<u>우자 유산·사산휴가</u>
2
<u>출산전후휴</u>
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유

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u>산·사산휴가</u>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u>.</u>